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5. 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2년 4월 27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2년 5월 3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6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2. 5. 7)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김정진)

가. 제안이유

- 관세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의료기기법」 개정 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에 관한 사무” 의 근거법령을 변경함(안 별표 제8호)
- 「의료보호법」 이 「의료급여법」 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사무를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근거법령도 변경함(안 별표 제16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중 별표 1(구청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내부위임한 사항)의 개정 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지원에 관한 사무” 를

포함한 10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함(신설 - 안 별표 제20호부터제29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무가 구청장에게 권한이 양되어 “소독업에 관한 사무”를 비롯한 7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신설 - 안 별표 제31호, 제32호, 제36호 제41호부터제44호)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치매관리법」,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8개를 보건소장에게 위임(신설 - 안 별표 제30호, 제33호부터 제35호, 제37호부터제40호)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함께 시작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서울시가 동참하고 2012. 1. 5일 서울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그간의 논란이 해소됨에 따라, 우리구 학교급식 지원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원활한 급식지원체계를 갖추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므로 각종 법령 개정으로 구청장이 부여받은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비하여 동장 및 보건소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하고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제2호,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제18호에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무권한 및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 위임사무 목록과 근거법령을 현행에 일치시키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법령명을 정비함.

- 안 별표 제20호부터 제29호까지 구청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에 관한 사무” 등 10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도록 신설함.
- 안 별표 제30호부터 제44호까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사무” 등 15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설함.
- 안 별표 제30호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사무” 신설
 - 검진 등 5개 사무(“가” ~ “마”)
- 안 별표 제31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독업에 관한 관한사무” 신설
 - 소독업의 신고수리 등 5개 사무(“가” ~ “마”)
- 안 별표 제32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관한사무” 신설
 - 역학조사 등 11개 사무(“가” ~ “카”)
- 안 별표 제33호에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결핵예방에 관한 사무” 신설
 - 결핵집단발생시 역학조사 등 8개 사무(“가” ~ “아”)
- 안 별표 제34호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신설
 - 산후조리업 신고수리 등 9개 사무(“가” ~ “자”)
- 안 별표 제36호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신설
 - 정기예방접종의 실시 등 8개 사무(“가” ~ “아”)

- 안 별표 제38호부터 제40호까지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에 관한 사무”, “정신질환자에 관한 사무”, “기초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 심판위원회 관한 사무” 신설
 - 안 별표 제41호에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 신설
 -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등 12개 사무(“가” ~ “타”)
 - 안 별표 제42호에 「의료법」 개정으로
 -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사무” 신설
 - 지정 등 2개 사무(“가” ~ “나”)
 - 안 별표 제43호부터 제44호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의료기관 또는 응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 처분” 사무 신설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약사법」, 「의료법」 등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된 사무를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 조항에 맞추기 위한 정비로 타당한 개정으로 보여지며 검토 결과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18 호
----------	---------

제출연월일 : 2012.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을 변경함(안 별표 제8호)
- 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사무를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근거법령도 변경함(안 별표 제16호)
- 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중 별표 1(구청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내부위임한 사항)의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지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 10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함(신설 - 안 별표 제20호부터제29호)
- 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무가 구청장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소독업에 관한 사무”를 비롯한 7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신설 - 안 별표 제31호, 제32호, 제36호 제41호 부터제44호)
- 마. 「후천상면역결핍증 예방법」, 「결핵예방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치매관리법」,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8개를 보건소장에게 위임(신설 - 안 별표 제30호, 제33호부터제35호, 제37호부터제40호)
-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의료급여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정신보건법」, 「약사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서 합의 완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결과 :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에 의거 생략함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호의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별표의 제7호의 사목의 “제89조”를 “제98조”로 한다

별표의 제8호의 가목의 “의료기기법 제16조”를 “「의료기기법」 제17조”로, 나목의 “동법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를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로, 다목의 “동법 제33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라목의 “동법 제34조”를 “같은법 제39조”로, 마목의 “동법 제47조”를 “같은 법 제56조”로 한다

별표의 제9호의 라목의 “제7조”를 “제67조”로, “제93조”를 “제92조”로 한다

별표의 제10호의 “의료법 제35조 본문”를 “「의료법」 제35조”로 한다

별표의 제11호의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별표의 제12호의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같은 법”으로 하고, 라목의 “동법 제26조” 및 마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삭제 하고, 바목과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바. 시정명령	같은 법 제23조	보건소장
사. 청문 실시	같은 법 제26조	

별표의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13.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등록 신고 수리 나.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다. 보고의 징구 및 검사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바. 청문 실시 사. 과태료 부과 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33조	보건소장

별표의 제16호의 “의료보호증”을 “의료급여증”으로,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의 제18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의 제20호부터 제44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20.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상자 신청 접수 나. 수급자증명서 발급 다.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같은 법 제28조	동 장
21.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동 장
22.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 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동 장
23.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급여신청 접수 나. 한부모가족 지원 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동 장
24.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이용 및 신청접수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동 장
25.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제27조의2	동 장
26.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동 장
27.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	동 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관한 사무	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28. 토지 및 임야대장 발급에 관한 사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동 장
2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동 장
30.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검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나. 역학조사	같은 법 제10조	
다. 치료권고	같은 법 제14조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	같은 법 제15조	
마. 부양가족의 보호	같은 법 제20조	
31.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소독업의 신고수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나. 휴업 등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다. 서류의 징구 및 검사	같은 법 제57조	
라. 시정명령	같은 법 제58조	
마. 영업정지 등	같은 법 제59조	
32.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역학조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나.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다.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의 설치 등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라.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같은 법 제41조제3항	
마.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같은 법 제42조	
바. 감염병 유행에 관한 방역조치	같은 법 제47조	
사.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통지	같은 법 제43조	
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조치	같은 법 제46조	
자. 감염병의 예방조치	같은 법 제49조	
차. 소독의무	같은 법 제51조	
카. 소독업무의 대행	같은 법 제56조	
33. 결핵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결핵 집단발생시 역학조사	「결핵예방법」 제10조	
나. 결핵검진	같은 법 제11조제2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다. 결핵예방접종의 실시 라. 업무종사자의 일시 제한 및 해제 마. 입원명령 바. 부양가족의 보호 사. 결핵환자 등의 의료실시 아.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5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19조	보건소장
34.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산후조리업 신고수리 나. 산후조리업 승계 다. 보고·출입·검사 라. 시정명령 마. 폐쇄명령 바. 휴업, 폐업 재개신고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청문 실시 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3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35.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공자 등록 나. 제공자의 준수사항 다. 부당이득의 징수 등 라. 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제6항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23조	보건소장
36.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기예방접종의 실시 나.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다. 예방접종업무의 의료기관 위탁 라. 예방접종의 공고 마.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바.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사. 예방접종의 역학조사 실시 아.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 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1조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37.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8. 정신보건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나. 사회복지시설의 신고 수리 다.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신고 수리 라.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마. 청문 실시 바. 보고 및 검사 사. 과태료의 부과 징수	「치매관리법」 제17조 「정신보건법」 제13조의2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59조	수입기관 보건소장 보건소장
39. 정신질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입원조치 나. 입원조치의 해제 다. 계속입원 명령 라. 임시퇴원 및 재입원 명령 마. 외래치료 명령	「정신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7조의2	보건소장
40. 기초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 심판위원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치 및 운영 나. 기초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다. 퇴원 등의 심사 라. 퇴원명령 및 통지	「정신보건법」 제27조 및 제28조제4항부터제8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	보건소장
41.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나.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수리 다. 의약품도매상 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업무개시 명령 등 바. 폐기명령 등 사. 개수명령 아.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자. 허가증 등의 갱신 차. 허가증 등의 재발급	「약사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제62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같은 법 제81조	보건소장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98조	
42.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정 나.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등 지도 감독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같은 법 제63조, 제66조	보건소장
43.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나.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감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 제50조	보건소장
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각각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행정처분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업무정지 및 폐쇄명령 (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나. 청문 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62조	보건소장

별표의 근거법령 란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위 임 사 무			【별표】 위 임 사 무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업관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업관
1.(생략)			1. (현행과 같음)		
2.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휴직·복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조의5,제63조, 제65조,제27조,제60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	구의회 사무국장	2.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휴직·복직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조의5,제63조, 제65조,제27조,제60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	구의회 사무국장
나.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26조	보건소장	나.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30조의5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6조	보건소장
다.소속공무원에 대한 승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다.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라(생략)	(생략)		라. (현행과같음)		
3.~6.(생략)			3.~6.(현행과 같음)		
7.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나(생략) 다.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 라.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및 변경·폐지신고 수리 마.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폐기, 개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바.허가증, 등록증의 갱신, 재교부 사.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	(생략) 동법 제22조 동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동법 제69조부터 제71조 동법 제74조 내지 제76조, 제77조 동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00조 동법 제81조, 제89조	보건소장	7.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나(현행과 같음) 다.폐업, 휴업 및 재개업 신고의 수리 라.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및 변경·폐지신고 수리 마.지도감독(보고와 검사 등, 폐기, 개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바.허가증, 등록증의 갱신, 재교부 사.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같은 법 제69조부터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내지 제76조,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같은 법 제81조, 제89조	보건소장
8.의료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신 고사항 변경, 폐업 등의 신 고 나.지도 감독(보고와 검사 등, 폐기, 사용중지명령,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다.과징금 부과 및 징수 라.청문 마.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료기기법 제16조 동법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	보건소장	8.의료기기판매업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신 고사항 변경, 폐업 등의 신 고 나.지도 감독(보고와 검사 등, 폐기, 사용중지명령,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다.과징금 부과 및 징수 라.청문 마.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의료기기법」 제17조 같은 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보건소장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관
	<u>동법 제47조</u>			<u>같은 법 제56조</u>	
9.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관한 다음 사무 가.개설신고의 수리 나.변경신고의 수리 다.휴·폐업신고의 수리 라.의료기관 감독(지도와 명령, 보고와 업무감사 등, 개설허가의 취소 등,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	<u>의료법 제33조제3항</u> <u>동법 제33조제5항</u> <u>동법 제40조</u> <u>동법 제59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7조, 제93조</u>	보건소장	9.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에 관한 다음 사무 가.개설신고의 수리 나.변경신고의 수리 다.휴·폐업신고의 수리 라.의료기관 감독(지도와 명령, 보고와 업무감사 등, 개설허가의 취소 등, 과징금, 과태료 처분 등)	<u>「의료법」 제33조제3항</u> <u>같은 법 제33조제5항</u> <u>같은 법 제40조</u> <u>같은 법 제59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92조</u>	보건소장
10.의료기관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설신고의 수리	<u>의료법 제35조 본문</u>	보건소장	10.의료기관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설신고의 수리	<u>「의료법」 제35조</u>	보건소장
11.안마시술소·접골소·침구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	<u>의료법 제81조, 제82조</u> <u>동법시행규칙 제24조</u> (생략)	보건소장	11.안마시술소·접골소·침구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	<u>「의료법」 제81조, 제82조</u> <u>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u> (현행과 같음)	보건소장
12.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생략) 나.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다.보고의 징구와 검사 등 라.개설등록의 취소 등 마.과태료 부과 징수	(생략) <u>「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u> <u>「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u> <u>「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제26조</u> <u>「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u> <u>「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u> <u><신 설></u>	보건소장	12.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현행과 같음) 나.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다.보고의 징구와 검사 등 라.개설등록의 취소 등 마.과태료 부과 징수	(현행과 같음) <u>같은 법 제13조</u> <u>같은 법 제15조</u> <u>같은 법 제24조</u> <u>같은 법 제33조</u> <u>같은 법 제23조</u> <u>같은 법 제26조</u>	보건소장
			<u>바. 시정명령</u> <u>사. 청문 실시</u>		
13.치과기공시설의 인정, 인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u>「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u> <u>「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u>	보건소장	13. <u>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u> 가. 개설등록 신고수리 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다. 보고의 징구 및 검사 라. 시정명령 마. 개설등록의 취소 바. 청문 실시 사. 과태료 부과 징수	<u>「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u> <u>같은 법 제13조</u> <u>같은 법 제15조</u> <u>같은 법 제23조</u> <u>같은 법 제24조</u> <u>같은 법 제26조</u> <u>같은 법 제33조</u>	보건소장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관
14.~15.(생략)			14.~15.(현행과 같음)		
16.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등장	16.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등장
17.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삭제<2000.12. 1> 나.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 다.삭제<2000.12. 1>	농지법 제5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등장	17.농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삭제<2000.12. 1> 나.농지원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 다.삭제<2000.12. 1>	농지법 제52조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등장
18.대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대마취급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나.대마취급자 허가증 교부와 등재 및 변경 다.대마취급자의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라.사고대마의 사유보고 접수 마.대마취급자격상실자의 대마 처분에 대한 승인 바.대마재배자의 보고 접수 사.출입검사와 수거 아.대마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자.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차.청문의 실시 카.과징금 부과 및 징수 타.마약류감시원 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제8조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동법 제13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 제43조 동법 제44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 제48조	보건소장	18.대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대마취급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나.대마취급자 허가증 교부와 등재 및 변경 다.대마취급자의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라.사고대마의 사유보고 접수 마.대마취급자격상실자의 대마 처분에 대한 승인 바.대마재배자의 보고 접수 사.출입검사와 수거 아.대마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자.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차.청문의 실시 카.과징금 부과 및 징수 타.마약류감시원 임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법 제7조 같은법 제8조 같은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같은법 제13조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제41조 같은법 제42조, 제43조 같은법 제44조 같은법 제45조 같은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같은법 제48조	보건소장
19.(생략)			19.(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20.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상자 신청 접수 나. 수급자증명서 발급 다.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같은법 제28조	등장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관
<신설>	<신설>	<신설>	21.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동장
<신설>	<신설>	<신설>	22.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자 신청, 접수에 관한 사무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동장
<신설>	<신설>	<신설>	23.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급여신청 접수 나. 한부모가족 지원 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동장
<신설>	<신설>	<신설>	24.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이용 및 신청접수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동장
<신설>	<신설>	<신설>	25.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27조, 제27조의2	동장
<신설>	<신설>	<신설>	26.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동장
<신설>	<신설>	<신설>	27.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동장
<신설>	<신설>	<신설>	28. 토지 및 임야대장 발급에 관한 사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5조	동장
<신설>	<신설>	<신설>	2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동장
<신설>	<신설>	<신설>	30.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검진 나.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 마. 부양가족의 보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20조	보건소장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관
<신설>	<신설>	<신설>	31.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독업의 신고수리 나. 휴업 등의 신고수리 다. 서류의 징구 및 검사 라. 시정명령 마. 영업정지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같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59조	보건소장
<신설>	<신설>	<신설>	32.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역학조사 나.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다.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 기관의 설치 등 라.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마.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바. 감염병 유행에 관한 방역 조치 사. 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통지 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조치 자. 감염병의 예방조치 차. 소독의무 카. 소독업무의 대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제41조제3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6조	보건소장
<신설>	<신설>	<신설>	33. 결핵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결핵 집단발생시 역학조사 나. 결핵검진 다. 결핵예방접종의 실시 라. 업무종사자의 일시 제한 및 해제 마. 입원명령 바. 부양가족의 보호 사. 결핵환자 등의 의료실시 아.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결핵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같은 법 제19조	보건소장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관
			관리		
<신설>	<신설>	<신설>	34.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산후조리업 신고수리 나. 산후조리업 승계 다. 보고출입검사 라. 시정명령 마. 폐쇄명령 바. 휴업, 폐업 재개신고 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아. 청문 실시 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모자보건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제15조의3 같은 법 제15조의7 같은 법 제15조의8 같은 법 제15조의9 같은 법 제15조의10 같은 법 제15조의11 같은 법 제15조의13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보건소장
<신설>	<신설>	<신설>	35.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제공자 등록 나. 제공자의 준수사항 다. 부당이득의 징수 등 라. 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제6항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23조	보건소장
<신설>	<신설>	<신설>	36.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기예방접종의 실시 나.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다. 예방접종업무의 의료기관 위탁 라. 예방접종의 공고 마.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바.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사. 예방접종의 역학조사 실시 아. 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1조	보건소장
<신설>	<신설>	<신설>	37.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치매관리법」 제17조	보건소장
<신설>	<신설>	<신설>	38. 정신보건시설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정신보건법」 제13조의2	보건소장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판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판
			나. 사회복지시설의 신고 수리 다.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신고 수리 라.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 마. 청문 실시 바. 보고 및 검사 사. 과태료의 부과 징수	같은 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59조	
<신설>	<신설>	<신설>	39. 정신질환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입원조치 나. 입원조치의 해제 다. 계속입원 명령 라. 임시퇴원 및 재입원 명령 마. 외래치료 명령	「정신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7조의2	보건소장
<신설>	<신설>	<신설>	40. 기초보건심의위원회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치 및 운영 나. 기초보건심의위원회에의 회부 다. 퇴원 등의 심사 라. 퇴원명령 및 통지	「정신보건법」 제27조 및 제28조제4항부터 제8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	보건소장
<신설>	<신설>	<신설>	41.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나. 도매업무관리자 신고 수리 다. 의약품도매상 약품유통관리 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라. 보고와 검사 등 마. 업무개시 명령 등 바. 폐기명령 등 사. 개수명령 아.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자. 허가증 등의 갱신 차. 허가증 등의 재발급 카.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약사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 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제62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보건소장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업관
<신설>	<신설>	<신설>	42.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지정 나.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등 지도 감독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같은 법 제63조, 제66조	보건소장
<신설>	<신설>	<신설>	43.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나.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 감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 제50조	보건소장
<신설>	<신설>	<신설>	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각각 해당 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행정처분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 소, 업무정지 및 폐쇄명 령(단, 폐쇄명령은 신고 의 경우에 한함) 나. 청문 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62조	보건소장